

제7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5. 4. 14.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5년 4월 14일(화) 16:45~18:05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임 종 룡 위 원 장

정 찬 우 부위원장

정 지 원 위 원

김 학 균 위 원

진 응 섭 위 원

장 병 화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15년도 제6차 금융위 회의록 및 제1차 금융위 서면회의 회의록 보고

- 2015년도 제6차 금융위 회의록 및 제1차 금융위 서면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66호 『○○○(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67호 『○○○(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68호 『○○○(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제66호 관련)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법적 측면에서 중징계는 법률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포괄적 감독자에 대한 중징계는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전례 없는 중징계는 비례·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과도한 조치이므로 제재 조치의 하향조정을 바란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퇴장

※ (제68호 관련)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매출목표를 평가조직의 성과보상기준으로 사용한 경우는 없었으며, 금감원 검사에서 지적이 있는 후 평가와 영업의 분리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였고 내부제도도 정비하였음

감독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으려면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는 바, 본 건의 경우는 두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함]

※ 진술인 퇴장

- 제재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다소 논란이 없지는 않지만, 지적된 위반 사항은 신용평가제도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용평가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 등 정책적인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원안대로 조치하는 것으로 금융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짐

⇒ 각각 원안 의결함

- 의결안건 제69호 『BBVA은행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제70호 『지에프아이코리아외국환중개(주)의 금융

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제71호 『OCBC은행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
투자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 의결함

- 의결안건 제72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
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의결안건 제73호 『○○○은행 외 4개 은행의 ○○○론 주식
취득에 대한 사후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감독
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의결안건 제74호 『느가라 인도네시아 은행 서울지점 신설
예비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20호 『행정지도 존속기한 연장보고』를 서면
보고함

⇒ 원안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15년도 금융위원회 제7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